

병과별 적용 기준(제15조제6항 관련)

구분		병과
전투 병과 (0.5점)	육군	보병과, 기갑과, 포병과, 방공과, 정보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항공과
	해군	해군 함정과, 항공과, 정보과 및 해병대 보병과, 포병과, 항공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기갑과, 정보과
	공군	조종과, 항공통제과, 방공포병과
그 밖의 병과 (0점)		

비고: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또는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일반군무원 5급의 직위에 응시하는 사람은 위 표의 전투병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,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일반군무원 6급 이하의 직위에 응시하는 사람은 위 표의 전투병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배점을 부여한다.